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◦ 제　출 : 2007. 10. 29.(사천시장)

◦ 회　부 : 2007. 10. 29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73호)

◦ 상　정 : 2007. 11. 07.(제11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. 제안이유

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칭변경(동사무소→동주민센터) 지침시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「지방자치법」제6조 규정대로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중 ‘읍·면·동사무소’를 ‘읍·면·동의 사무소’로 규정하도록 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다. 관계법령

◦ 「지방자치법」

◦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◦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산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,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「지방자치법」

제6조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